

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심의일자	2018. 8. 10(금)		
사업명	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(변경)		
신청위치	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일대		
의결번호	(굴)2018-14-1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
[심의 내용] 굴토계획

- ▣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,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▣ 참고로,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**
 - 기초형식 선정에서 지지력 부족시 파일기초에 대한 사전계획(규격, 길이 등)을 수립하기 바람
- 흙막이 가시설 분야**
 - 흙막이 굴착 D-D 단면의 경우 사면의 경사가 급하고, 단차가 5m에 이르므로 소단내 가배수로 추가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
 - 흙막이 굴착 J-J 단면의 경우 H-pile 근입 깊이를 기초의 계획저면까지 내리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
 - 사면 절개공법으로 변경된 단면 D-D의 경우 상부 매립층이 자갈과 모래로 구성된 지층으로서 집중 강우시 지표수가 침투하여 사면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, 원지반 지하수위면을 상승시키는 것보다 지표부근이 포화될 경우를 대상으로 사면안정성을 검토하기 바람
 - 흙막이 굴착 단면 L-L의 경우 사면 활동면을 굴착하부로 유도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였는데 상부 풍화토층으로 제한할 경우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지층구조이므로 지표면 포화상태를 전제로 검토하기 바람(주변 구조물에 대한 침하 안정성을 재확인하기 바람)
 - 토류판을 적용하였는데 상부 풍화토층까지는 소일시멘트를 되메움재료로 사용하여 차수성과 강성을 증대시키도록 계획하기 바람

계측관리 분야

- 지하수위 계측은 굴착의 직접 영향 위치에 근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가능한 굴착 면에서 이격시켜서 설치하기 바람(굴착깊이 만큼 이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, 부지여건 및 그라우팅 시행여부를 감안하기 바람)
- 굴착 후 비합벽으로 지하층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체 전후로 해당 구간의 지중경사계와 하중계에 대한 계측을 시행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명기하기 바람(주변 건물에 설치되는 건물경사계는 흠막이 벽체면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복수 설치하여 침하 영향 판단 바람)

기타분야

- 영구배수공법 적용시 유지관리방안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기 바람. 끝.